

제 호	지 급 보 증 서				
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
주 소					
대 부 종 류	대상구분				보훈번호
지급보증금액					
지급보증기간	. . . 부터 . . . 까지				
	귀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대부에 따른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금액을 지급보증기간내에 하더라도 교부함(대부재산을 매도한 자가 본 증서를 소지한 경우는 채무자와 함께 당 기관에 나오시면 위 금액을 교부함)				
지급보증 금액분할 교부사항	교 부 회 수	교 부 일 자	교 부 금 액	잔 액	비 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합니다. 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(인)					